

# 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  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「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2012. 6. 22 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윤성옥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2년 5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6월 13일

(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윤성옥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도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,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노사민정협의회 설치, 구성 및 기능 조항 신설(안 제2조)
- 일부 조문의 정비(안 제3조, 안 제4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전문위원 : 송장섭)

- '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제2조의1로 하고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내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충청북도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.

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
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충청북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
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

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 중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를 “도지사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협의회”로 하고,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(노사민정협회의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내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충청북도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.</p> <p>④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</p> <p>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</p> <p>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4. 충청북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</p> <p>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 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</p> <p>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</p> <p>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위원의 임기) ① ~ ② (생략)</p> <p>제3조(위원의 해촉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~ 3 (생략)</p> <p>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제2조의1(위원의 임기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----- -----협의회----- ----- -----총괄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"지역 노사민정"이라 한다)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<개정 2012.4.16>

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 다만,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(互選)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. <개정 2012.4.16>

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  
<신설 2012.4.16>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
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
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

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2.4.16>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·운영,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·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2.4.16>